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4-0319호 (5893,'25.08.26~'26.08.25)

상품안내

삼성사이버종합보험

■ 상품안내

· 최근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사이버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이버 영역 특성 상 공격이 방어보다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이버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재정적 손실 등을 포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0년 Rank	2024년 Rank
① 인력관리	**① 사이버 보안**
② 공급망	② 운용 문제
③ 지역주의로의 회귀	③ 신흥/혁신 기술
④ 환경, 기후변화	④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
⑤ 사이버 보안	⑤ 환경, 기후변화

* 출처 : KPMG 2021, 2024 CEO Outlook

·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보안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사이버 침해사고 중 중소기업의 피해 비중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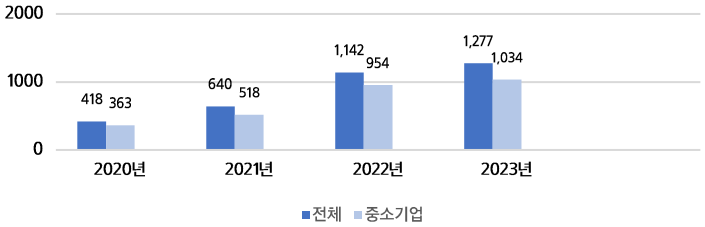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21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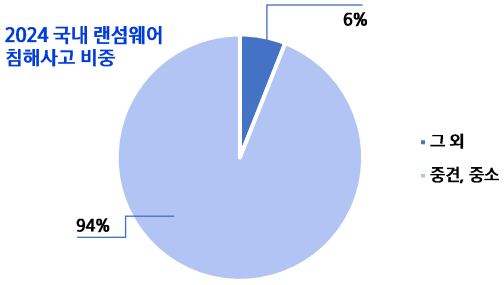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국내사고사례)

'23년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	'23년 통신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장애	'23년 출판기업 개인정보 유출	'24년 국내 제조 기업 랜섬웨어 피해
온라인 오픈 채팅방의 참여자 정보 획득으로,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6만 5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 60여만 건 유출 및 디도스 공격으로 총 5회, 약 120분 동안 인터넷 서비스 중단 (과징금 68억)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1:1 문의 게시판 접근통제 시스템 오류로 두 차례에 걸쳐 13,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8억)	랜섬웨어 조직 '언더그라운드' 측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당 기업의 데이터가 유출 (유출규모: 746GB)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자료 '과징금 과태료 부과내역' / 보안뉴스 언론보도 '랜섬웨어 조직 언더그라운드, 한국 회사 해킹 주장 … 샘플 데이터 공개'

·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또한 대비해야 합니다.

대형 랜섬웨어 조직의 붕괴 이후 소규모 해커 중심으로 재편되어 공격대상 또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보단 해커와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욱 위험 대비가 필요합니다.

* 출처: 체이널리시스 '2025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랜섬웨어'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국내] 사이버 관련 법률 변화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사이버 사고관련 신고 의무화 등 법률 규제 강화 및 건 당 과징금 규모 증가 추세

	2016년 [자율공시]	2022년 [의무공시]	2024년 [유출신고 의무화]
대상자	총 91개사	총 655개사	전 사업자
내용	매년 하반기 현황 공시		72시간 이내 최초 신고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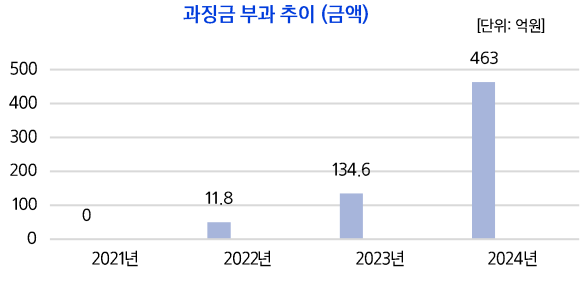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자료 '과징금 과태료 부과내역'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4-0319호 (5893,'25.08.26~'26.08.25)

상품안내

삼성사이버종합보험

■ 주요 담보내용

담보 부문	주요 담보 내용
[제 1부문] 사이버사고 재산손해	• 사이버 사고 이후 발생하는 대응 및 복구비용 • 협박, 갈취 등 사이버범죄 손해액, • 사이버 사고 이후 평판관리를 위한 평판보호비용
[제 2부문] 사이버사고 기업휴지손해	• 제 1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손실 (보상기간 동안 발생한 총 이익상실액 및 특별비용)
[제 3부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손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하는 의무보험 대체 가능	•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제 4부문] 기밀정보유출 배상책임손해	• 기밀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제 5부문]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손해	• 시스템 보안 실패 및 위반으로 인한 제3자 시스템의 데이터/서비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
[제 6부문] 미디어 배상책임손해	• 업무 상 온라인 미디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의도적, 악의적 또는 고의적 행위, 누락
2) 신체 상해 및 재물 손해
3) 신용정보유출손해 (단, 특별약관 추가를 통해 담보 가능)
4)「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과징금
(단, 특별약관 추가를 통해 담보 가능)

■ 추가 가입 특약

· 제 3부문 가입 시
1)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2)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 보장 특별약관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플랜

기본형	고급형	종합형	자유형
제 1부문 (재산손해)	제 1부문 (재산손해)	제 1부문 (재산손해)	선택가입 가능 * 단, 제 1부문은 필수 선택
제 2부문 (기업휴지)	제 2부문 (기업휴지)	제 2부문 (기업휴지)	
제 4부문 (기밀정보유출)	제 3부문 (개인정보유출)	제 3부문 (개인정보유출)	
· 해당 상품은 플랜형으로 플랜 별 담보 부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자유형 플랜을 통해 담보 부문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 4부문 (기밀정보유출)	제 4부문 (기밀정보유출)	
		제 5부문 (네트워크보안)	
		제 6부문 (미디어배상)	

■ 가입대상 및 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대상

1. 매출액 1천억 이하 및 개인정보 정보주체 수 300만명 이하의 기업
2.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담보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3. 사이버 사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입 시 필요서류

1. 삼성사이버종합보험 설문서 ※ 매출액 300억원 초과 시 필요

삼성화재

상품안내

삼성사이버종합보험

■ 알아 두실 사항

•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종사자에 관한 사항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직원, 삼성화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를 말하며 보험회사 직원을 제외한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기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④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상기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상품안내

삼성사이버종합보험

■ 알아 두실 사항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상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화재 (TEL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고객센터>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해약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임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 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